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일자 : 2009년 2월 13일

발 의 자 : 재정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사무위임조례(제5조 관련)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 중 “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과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개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개정조례안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명 중 “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를 “도로구역 내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로 하고, 내용 하단의 “및 특별시도의 녹지대 관리” 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명 1. 중 “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를 “도로구역 내 녹지대(이하 이 란에서 “녹지대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”로 하고, “및 특별시도의 녹지대 관리”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주관 부서	사무명	근거 법령	수임 기관	주관 부서	사무명	근거 법령	수임 기관
조경과	1.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(단, 세종로·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, 노폭20m이상 도로신설시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 제외)	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	구청장	조경과	1. 도로구역 내 녹지대(이하 이 란에서 “녹지대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(단, 세종로·시청앞의 녹지대 설치 및 관리, 노폭20m이상 도로신설시의 녹지대 설치 제외)	도로법 제23조	구청장
	3. 세종로, 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·관리	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	녹지사업소장		3. 세종로,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·관리	도로법 제23조	녹지사업소장
	4.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·관리	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	도시기반시설본부장		4.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·관리	도로법 제23조	도시기반시설본부장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